

제2장
상품무역

제2.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무관세란 관세가 없음을 말한다. 그리고

수입허가란 수입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서 신청서 또는 그 밖의 서류(통관목적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를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제2.2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에 적용된다.

제2.3조
내국 과세 및 규정에 대한 내국민 대우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를 구성한다.

제2.4조
관세 인하 또는 철폐

1. 부속서 2-가에 포함된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하지 않는다.
2. 이 협정의 발효 시, 한국은 부속서 2-가-1에 따라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적용되는 자국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고, 아랍에미리트는 부속서 2-가-2에 따라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한다.
3. 당사국이 자국의 최혜국 실행 관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그 관세율이 부속서 2-가에 포함된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규정된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보다 낮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관세율이 그러한 상품에 적용된다.

제2.5조

관세 양허의 가속화 또는 확대

1.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양 당사국은 부속서 2-가에 포함된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양허를 가속화하거나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을 고려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2. 제1항에 따른 양 당사국 간의 추가적 약속은 각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되었을 때 부속서 2-가에 포함된 각국의 양허표에 따라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양허를 일방적으로 가속화하거나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한 모든 관세 양허의 일방적인 가속화 또는 그 범위의 확대는,
 - 가. 부속서 2-가의 각국 양허표에 따라 결정된 관세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영구적으로 대체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 나. 일방적인 인하를 한 후에 부속서 2-가에 포함된 각국 양허표에 설정된 수준까지 다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그 당사국의 권리를 해제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제2.6조

상품 분류 및 양허표 전환

1. 양 당사국 간 무역에서의 상품 분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및 그 개정에 합치한다.
2. 양 당사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주기적 개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부속서 2-가에 포함된 각 당사국의 양허표를 현행화할 필요가 있는지 협의한다.
3. 각 당사국은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국 양허표의 전환이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양허를 손상하지 않고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이는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는 것과, 상품무역위원회가 채택할 합의된 전환 지침에 따르는 것을 포함한다.

제2.7조

수입 및 수출 제한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2.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달리 정당화되는 금지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조치를 도입하는 경우, 조치를

부과하는 당사국은 시기적절하게 그 조치를 공표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양 당사국은 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협의를 개시한다.

제2.8조 수입허가

1. 어떠한 당사국도 필요한 변경을 위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되는, 수입허가협정¹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2. 새로운 또는 변경된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기 전에, 당사국은 정부의 공식적인 인터넷 사이트에의 공표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정부 및 무역업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를 공표한다.

제2.9조 관세 평가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변경을 위하여, 양 당사국 간 거래되는 상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2.10조 수출 보조금

1. 어떠한 당사국도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과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수출 보조금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국은 농산물에 대하여 예정된 수출 보조금 권리의 철폐를 포함하여 2015년 12월 19일에 나이로비에서 채택된 「수출 경쟁에 관한 WTO

¹ 제 1 항의 목적상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 할 때 양 당사국은 그 협정에 포함된 “수입허가”의 정의를 적용한다.

각료회의 결정(WT/MIN(15)/45, WT/L/980)」에서 한 자국의 약속에 따라서만 당사국이 농산물에 대하여 수출 보조금을 유지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다.

제2.11조 국제수지 보호조치

1. 양 당사국은 국제수지 목적상 제한조치의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상품무역에 대한 국제수지 목적상 취해진 모든 조치는 필요한 변경을 위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 1994년도 GATT 제12조 및 「1994년도 GATT의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양해」를 따른다.

제2.12조 행정 수수료 및 형식

1. 각 당사국은 수입 및 수출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이 1994년도 GATT 제8조제1항 및 그 주해에 따른 자국의 의무에 합치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자국이 부과하는 수수료 및 부과금의 현행 목록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유지한다.

제2.13조 비관세 조치

1. 어떠한 당사국도 세계무역기구협정 또는 이 협정상 자국의 권리 및 의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어떠한 비관세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2. 각 당사국은 비관세 조치와 관련된 자국의 법, 규정, 절차 및 행정판정이 다른 쪽 당사국과의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도록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3.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비관세 조치가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여기는 경우, 그 당사국은 상품무역위원회의 검토를 위하여 서면 요청서를 통하여 그러한 비관세 조치를 지명할 수 있으며, 서면 요청서는 예정된 차기 상품무역위원회 회의일의 최소 30일 전에 제출된다. 검토를 위한 비관세 조치의 지명은 그 조치의 지명 사유, 그 조치가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가능한 경우, 제안된 해결책을 포함한다. 상품무역위원회는 요청의 접수일부터 90일 내에 그 사안에 대하여 상호 합의된 해결을 확보하기 위하여 즉시 그 조치를 검토한다. 상품무역위원회에 의한 검토는 제15장(분쟁해결)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

제2.14조 국영무역기업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1994년도 GATT 제17조, 그 주해 및 「1994년도 GATT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에 따라 국영무역기업을 유지하거나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2.15조 상품의 일시 반입²

1. 각 당사국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다른 쪽 당사국에서 수입한 다음의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일시 반입을 허용한다.

가. 수입 당사국의 법에 따라 일시입국의 자격을 갖춘 인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언론매체 또는 텔레비전을 위한 장비,

² 이 조의 목적상,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 “컨테이너” 및 “팔레트”라는 용어는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소프트웨어, 그리고 방송 및 영화촬영 장비를 포함하는 전문 장비

- 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 다. 상업용 견본품과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 라.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 그리고
- 마. 장비 운반에 사용되는 컨테이너 및 팔레트

2. 각 당사국은, 수입자나 관계인의 요청이 있고 자국의 관세 당국이 타당하다고 간주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처음에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일시 반입의 기한을 연장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제1항에 언급된 상품의 자국 영역으로의 무관세 일시 반입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가.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을 동안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않을 것
- 나. 그 상품이 다른 경우라면 반입 또는 최종 수입 시에 부담하게 될 관세 및 그 밖의 세금 또는 부과금을 넘지 않는 액수로서 그 상품의 수출 시에 반환될 수 있는 담보를 수반할 것
- 다. 그 상품이 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 라. 그 상품이 일시 반입의 목적과 관련된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일시 반입이 허용되는 기간 내에 수출될 것
- 마. 그 상품이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을 넘어 반입되지 않을 것
- 바.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의해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하에서만 그 인의 영업활동, 거래, 직업 또는 스포츠를 수행하는 데 사용할 것, 또는

사. 그 상품이 자국의 법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영역으로 달리 반입 가능할 것

4.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부담하게 될 관세 및 그 밖의 세금 또는 부과금과 자국의 법에 규정된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벌금을 적용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 당국을 통하여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의 신속한 반출을 규정하는 절차를 채택하고 유지한다. 가능한 범위에서, 그러한 절차는 그러한 상품이 일시 입국하려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수반될 때, 그 상품이 그 국민 또는 거주자의 입국과 동시에 반출되도록 규정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일시 반입되었던 상품이 반입되었던 통관 항구 외의 다른 통관 항구를 통하여 수출되도록 허용한다.

7.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을 책임지는 수입자 또는 관계인이 일시 반입을 위하여 정해진 원래 기간 또는 적법한 연장기간 내에 그 상품이 폐기되었다는 납득할 만한 증거를 수입 당사국에 제시하면 그 상품을 수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한다.³

제2.16조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1. 어떠한 당사국도,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상품을 수출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러한 수리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한 가치 증가분에 각 당사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관세 또는 그 밖의 세금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³ 특정한 경우, 당사국은 이 항에 따른 책임 면제의 조건으로, 상품이 그렇게 폐기될 수 있기 전에 수입자 또는 관계인이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어떠한 당사국도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이 조의 목적상, “수리” 또는 “개조”는 다음의 작업이나 공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가.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또는

나.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제2.17조

무시할 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의 무관세 반입⁴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시할 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에 대하여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그러한 견본품이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문을 권유하기 위해서만 수입될 것, 또는

나. 그러한 광고물이 포장 단위로 수입되고 각 포장이 그러한 광고물의 1부를 초과하여 담고 있지 않을 것과 그 광고물 또는 그 포장 중 어떠한 것도 더 큰 택송물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을 것

제2.18조

상품무역위원회

⁴ 이 조의 목적상, “무시할 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 및 “인쇄된 광고물” 이란 용어는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상품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공동위원회 산하에 설치한다.
2. 위원회는 매년 1회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된 시간, 장소 및 방법에 따라 회합한다. 위원회는 적절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는 전자우편, 화상회의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이 장의 이행과 운영을 점검 및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공동위원회에 보고 및 권고하는 것
 - 나. 이 협정에 따른 특혜 대우 또는 관세 철폐를 가속화하거나 그 범위를 개선하는 것과 적절한 경우 그 밖의 문제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을 증진하는 것
 - 다.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비관세 조치의 적용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에 대한 장벽을 다루고, 적절한 경우 공동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그러한 사안을 공동위원회로 회부하는 것
 - 라. 이 협정에 따른 각 당사국의 의무가 변경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개정을 검토하는 것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그러한 개정과 부속서 2-가 간의 충돌, 또는 부속서 2-가와 국가상품분류체계 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것
 - 마. 전환 방법 및 지침의 채택과 검토를 포함하여,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상품의 분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발생할 수 있는 차이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 바. 이 장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품무역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는 것, 그리고

사. 공동위원회가 부여할 수 있거나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부속서 2-가-1
한국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

1. 이 부속서의 양허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은 제2.4조에 따른 한국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적용된다.

가. 단계별 양허유형 “A”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의 발효일에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나. 단계별 양허유형 “B”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다. 단계별 양허유형 “C”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라. 단계별 양허유형 “TR”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5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여,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기준세율의 50퍼센트가 유지된다. 그리고

마. 단계별 양허유형 “X”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세율이 유지된다.

2. 품목에 대한 각 관세 인하 단계에서의 과도적인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관세율 및 단계별 양허유형은 그 품목에 대하여 양허표에 표시된다.

3. 과도적인 양허 단계별 관세율은 최소한 백분율의 가장 근접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되도록 그 아래는 버리거나, 관세율이 통화단위로 표시되는 경우, 한국의 경우 최소한 가장 근접한 원 단위로 표시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

4. 이 부속서 및 그에 포함된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1년차란 제18.5조(발효)에 규정된 대로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를 말한다.

5. 이 부속서 및 그에 포함된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2년차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별 관세인하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속서 2-가-2
아랍에미리트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

1. 이 부속서의 양허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은 제2.4조에 따른 아랍에미리트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적용된다.

- 가. 단계별 양허유형 “A”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의 발효일에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나. 단계별 양허유형 “B”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다. 단계별 양허유형 “C”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라. 단계별 양허유형 “TR”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5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여,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기준세율의 50퍼센트가 유지된다.
- 마. 단계별 양허유형 “X”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세율이 유지된다.
- 바. 단계별 양허유형 “PH(금지품목)”인 품목에 대해서는 이 협정상 관세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 사. 단계별 양허유형 “SG(특별관심품목)”인 품목에 대해서는 이 협정상 관세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

2. 품목에 대한 각 관세 인하 단계에서의 과도적인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관세율 및 단계별 양허유형은 그 품목에 대하여 양허표에 표시된다.
3. 과도적인 양허 단계별 관세율은 최소한 백분율의 가장 근접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 관세율이 통화단위로 표시되는 경우,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최소한 가장 근접한 아랍에미리트 디르함 단위로 표시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
4. 이 부속서 및 그에 포함된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1년차란 제18.5조(발효)에 규정된 대로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를 말한다.
5. 이 부속서 및 그에 포함된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2년차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별 관세인하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